

의안번호	제 647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329회)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647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현행 조례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조례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충청북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충청북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충청북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 6. 28>

1. 기금운용관 : 안전행정국장

2. 기금출납원 : 세정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1. 12. 31 신설)

###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